

조문별 개정이유서

1.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가. 개정 이유

- 세계무역기구(WTO) 협정에서 정해진 시장접근물량*이 현재의 국내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해 발생하는 수급불균형 및 가격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물량을 확대하려는 것임

* UR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율로 양허하면서 최소한의 시장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물량으로, 시장접근 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,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 부과

나. 개정 내용

- 팥·녹두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4,694톤에서 23,194톤으로 늘리는 등 총 13개 품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늘려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부족한 원료 농산물과 각종 전분 등의 저율관세 공급으로 식품·제지업계 원료 수급불안 해소 및 서민 생활물가 안정